

보도자료1
(개조식)

이 자료는 2026년 8월 3일(월) 18:00 이후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26. 8. 3.

재 정 경 제 부

목 차

I. 세제개편안 추진 여건	1
II. 2026년 세제개편안 추진방향	3
III.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	4
IV. 세제개편안 상세내용	5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5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7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8
2. 민생·지방 지원	
1) 서민·중산층 지원	9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12
3) 지방주도성장 강화	14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17
2) 가업상속공제 개편	24
3) 비과세·감면 정비	26
4.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30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32
3) 납세편의 제고	33
V.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35
VI. 추진일정	36

I. 세제개편안 추진 여건

- **(거시경제)**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 속 정부 정책 등으로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성장모멘텀 지속

* 실질성장률(전년동기비, %): ('25.上)0.4 → (下)1.8 → ('26.上)3.8
'26년 성장전망(% '26.1→7월 정부 전망: (실질)3.0<5년 만에 최고> (경상)12.3<30년 만에 최고>

- 다만, 중동전쟁*, 美 관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이에 따른 공급망 위험성과 첨단산업 경쟁 등 당면과제 대응 필요

*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7.15일), 홍해 봉쇄 가능성(7.21일)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지속

** 임시관세(10%) 만료(7.24일) 이후 韓(12.5%) 등 60개국에 신규관세 부과

- **(민생·구조 여건)**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문별·지역별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과제 여전

- K자 양극화,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금리·환율 상승 등에 따른 서민·중산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부담 지속

* 석유류 물가상승률(% , 전년동기비): ('26.1Q)2.5 (2Q)23.6

** 청년층 고용률 하락('25.上45.1→'26.上43.6%<△1.5%p>), 쉬었음 높은수준 유지('26.上41.5만명) 등

- 지방인구 감소 등 수도권-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

- **(세입여건)** 전반적 경기 회복세 및 반도체 호황, 증시 활성화에 따라 법인세수를 중심으로 세수 호조의 견조한 흐름*

* 국세수입(조원): ('23) 344.1 ('24) 336.5 ('25) 373.9 ('26추경) 415.4

- 다만, 경기 사이클에 따른 하방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관행화된 조세지출* 등에 따라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 우려

* 국세 감면액(조원): ('21)57.0 ('22)63.5 ('23)69.8 ('24)70.5 ('25°)76.5 ('26°)80.5

-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 요구

◇ 대내·외 각계 의견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① (개정 건의)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국세청, 관세청 등 26개 단체·기관에서 약 1,318건 세법개정* 건의

- *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해 건의 기관을 방문하여 개정건의 청취
- 대한상의, 상장사협의회, 세무사회, 중견련, 중기중앙회, 한경협

② (비과세·감면 평가)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 등에 대해 조세특례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32건* 진행

- *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일몰도래 의무심층평가(14건), 주요 조세지출 임의심층평가(17건), 신설 예정 조세지출 대상 예비타당성평가(1건)

③ (내부 논의) 주요 쟁점에 대해 조세정책심의회* 수시 개최

- *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세법간 정합성을 점검하는 절차로 세제실장, 국장 및 정책과장 등으로 구성

④ (대외 의견 수렴)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구 분	내 용
▶ 부동산세제 경청토론회	▶ 일반국민, 전문가, 학계, 협회, 관련 기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회 개최
▶ 관계기관 간담회	▶ 경제단체, 금융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18회)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세제분야 전문가*와 세제개편 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21회) * 소득·기업·재산·소비·국제조세·관세 등 6개 분야로 구성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 중장기적 시야에서 경제·재정여건 전망 및 정책방향 점검(2회) * 조세 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Ⅱ. 2026년 세제개편안 추진방향

기본 방향

- ①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② 서민·중산층, 청년 등 **민생지원**, 지방우대 등 **지방 지원**
- ③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④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정책
목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추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 (2) 중기·벤처 경쟁력 강화
-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민생·지방 지원

- (1) 서민·중산층 지원
-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 (3) 지방주도성장 강화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 (1) 부동산세제 합리화
- (2) 가업상속공제 개편
- (3) 비과세·감면 획기적 정비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 (1) 세제 합리화
- (2) 조세탈루 방지
- (3) 납세편의 제고

Ⅲ.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

1. 잠재성장을 반등 지원

미래성장동력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수소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중 소 벤 처 경 쟁 력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벤처기업 업력요건 완화
생 산 적 금 융	▸ 생산적금융 ISA 도입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 특례 신설

2. 민생·지방 지원

서 민·중 산 층	▸ 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 년 혼 인·출 산	▸ 청년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
지 방 주 도 성 장	▸ 지방을 우대하여 세제지원 강화(R&D, 투자, 중기취업자 등) ▸ 지방 이전세제 실효성 강화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부 동 산 세 제	▸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증부세 합리화 ▸ 거주용 1주택은 지속 보호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대상업종 조정, 공제요건 합리화 등) ▸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비 과 세 감 면 정 비	▸ (종료)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등 ▸ (재정전환)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등 ▸ (재설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 요건 추가 등

4. 세제 합리화 · 납세편의 제고

세 제 합 리 화	▸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조 세 탈 루 방 지	▸ 탈세·은닉재산 제보 신고포상금 확대 ▸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한도 인상
납 세 편 의 제 고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 단기간 내 기한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

IV. 세제개편안 상세내용

1 잠재성장을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녹색전환·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 신설
 - (지원분야)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6대 분야 적용
(^①태양광발전, ^②풍력발전, ^③이차전지, ^④반도체, ^⑤핵심소재, ^⑥AI로봇부품)
※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요건)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 & 국내 직접 판매
 - * 핵심공정 국내 수행 & 적격생산비용 중 국내지출분이 일정비율 이상 등 (시행령 규정)
 - (공제액*) 적격품목 생산량 × 기준공제액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 공제한도: Min [적격생산비용 50%, { (적격품목 생산시설 투자누계액 × 50%) - 누적 공제금액 }]
 - (지방우대) 기준공제액 × 생산 지역별 계수*
* ^①수도권 1.0, ^②비수도권 광역시등 1.1, ^③기타 비수도권 1.3,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지역 구분 방식 및 지역별 계수에 대해서는 p.14에서 상세 설명
 - (점감구조)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 (75 → 50 → 25%)
 - (적용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외
 - (적용기한) '36.12.31.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법인법·소득법)

-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해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 인정(연 800만원 한도)
-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상향(연 1,000만원)하고, 내연차는 하향(연 700만원)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조특법)**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연구개발공제율(%) :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미래 전력수요 대응 지원을 위해 현행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예: SMR, MMR기술 시설)분야로 확대 개편

※ 구체적인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 (원칙)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예외) 운수업·자동차 판매업 등에 직접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법인세 지원(조특법)**

※ 「대산1호 프로젝트 지원 패키지」('26.2.25.),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 기업의 투자·배당·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과세(20%)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이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확대* ※ 일몰 3년 연장(~'29년)

*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화주 기업에 대해 장기계약(3년 이상) 운송비용의 1%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간 신설**

*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별·규모별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②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중견 10%, 중소기업 15%)

** [현 행]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5년) 적용 후) 즉시 종료
[개정안] 3년간 축소된 혜택(①:감면을 1/2 축소, ②:공제율 12.5%) 적용 후 종료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신설(조특법)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크게 계상하여 법인세 이연효과 발생

※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 중소기업이 안전설비*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25→50%)

*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 예: 5년(하수처리업, 출판업 등의 설비), 10년(금속 광업, 식료품 제조업의 설비 등)

☐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①, ②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18.)에서 발표

- ①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 지원* 적용 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설립후 7→10년 이내)

* (내국법인) 벤처회사에 출자·투자시 세액공제, (벤처투자회사등) 벤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②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7%)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벤처기업·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③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시화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조특법)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일반 ISA 제도는 정비

	일반 ISA (개정안)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청년형 ISA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34세 이하 청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세제혜택	한도 내 이자·배당 비과세, (초과분 9% 저율과세) * 한도: 일반 200만원, 서민 400만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투자대상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연간한도 이월 불가)	연 2천만원, 총 2억원 (연간 한도 이월 불가)	
투자기간	3년 (총 5년까지 연장 가능)	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적용기한	~'29.12.31	~'29.12.31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29.12.31.)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상향*

* [현행] 채권잔액 x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개정안] 채권잔액 x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x 1.2]

1) 서민·중산층 지원

□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완화 및 평탄구간* 확대

*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없이 최대지급액을 지급받는 가구소득 구간

(단위:만원)	소득요건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단독	2,200	2,600	400~900	(현행과 같음)	165	180
홀벌이	3,200	3,700	700~1,400	(현행과 같음)	285	310
맞벌이	4,400	5,200	800~1,700	800~1,800	330	360

□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 총급여 8,000만원(성실사업자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연 1,000→1,200만원)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조특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무주택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 과세특례 상시화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3% → 2%*)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외국인 프로선수는 20%) 세율 유지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 가입 등 성실한 신고 기반을 갖춘 사업자

**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로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 간주임대로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은 비과세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로 소득세 과세시 소규모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40원/kg(23.39원/ℓ) 감면

-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창출한 재화 및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업종별 2/102~9/109)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8/108→9/109) 적용기한 2년 연장(~'28.12.31.)

☐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

** ①압류 · ②매각 · ③납부고지 유예 또는 ④지정납부기한 연장

-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납부고지 등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상증법)**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2배 확대(5→10억원)

☐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① (법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상시화

* (법인세) 소득종류별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배당소득세) 면제 또는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 ②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상시화

- ③ (부가가치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등 대행용역 및 수입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 ④ (간접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관세법·령)**

※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26.2.26.)에서 발표

- ①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보세 구역 반출명령을 허용*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현행] 보세구역 수용능력 초과 등 물품관리 목적으로만 반출명령 가능

- ②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 단축*하고, 기한 경과시의 가산세 한도를 상향(500→1,000만원)

* [현행]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 [개정안] 20일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 청년에 대한 소득세 월세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총급여 8,000만원(성실사업자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17% 적용(~'29.12.31.)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포함))

- 청년층 자산형성 및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15% 적용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조특법)

- 청년(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의 생산적금융 ISA 납입금에 대해서는 10% 소득공제* 적용

* 비과세 혜택, 투자 대상, 납입 한도 등은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

☐ 대학생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 한국장학재단 제공 기숙사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사학진흥재단 제공 기숙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55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공장·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소득법)

*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세대주 미공제시 세대원 1인)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연 400만원)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26.6.9.)에서 발표

-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부부합산 공제한도 연 400만원)

□ 혼인으로 인한 경차 2대 소유시 1대에 대해 유류세 환급 적용 등(조특법·령)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26.6.9.)에서 발표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경형자동차(1,000cc미만)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 경차 소유자 간의 혼인신고로 경차 2대 소유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허용*

* [현행] 가구당 각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대 이상인 경우 유류세 환급 배제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2회 이내)한 경우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 비과세(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 20만원까지의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3) 지방주도성장 강화

☐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방 우대

* ①수도권: 1.0 ②비수도권 광역시등: 1.1 ③기타 비수도권: 1.3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①수도권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③기타 비수도권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①소재 우대지역*	▸ 기타 비수도권 ▸ ②소재 우대지역*	▸ ③소재 우대지역*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구체적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게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연 200만원 한도)

- 감면율·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29.12.31.)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소득세 감면율·감면기간 지방 우대

구 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①수도권	5년 90%	5년 90%	3년 70%	3년 70%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90%		3년 75%
③기타 비수도권		7년 90%		3년 80%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또는 사업장 신·증설시 이전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3년간, 최대 월 50만원*)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월 5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 개인이 지방정부(기부자의 거주지 제외)에 기부시 기부금액(연 2,000만원 한도)의 일부를 세액공제

○ 기부 지역별로 소득세 세액공제율 지방 우대 적용

기부지역별 소득세 세액공제율 지방 우대

지 역	기부금액	~10만원		10~20만원		20~2,000만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①수도권	100/110	100/110		40%	40%	15%	15%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③기타 비수도권				50%		25%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 창업 또는 벤처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연 5억원 한도)

○ 지방 창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고,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점프업 중소기업(도약기업, 중기부 선정),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에 기초하여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선정 예정)

창업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감면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구 분	①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일반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③기타 비수도권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중소기업	-	25%	50%	중소기업	-	25%	50%	60%	70%
벤처	50%			벤처	50%		60%	70%	80%
에너지 신기술	50%			에너지 신기술	50%		60%	70%	80%
점프업				점프업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청년	50%	75%	100%		
				신산업	60%	85%	100%		
창업보육	50%			창업보육	-	25%	50%	60%	70%

*생계형: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조특법)

- ①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의 지역환류 유도를 위해 감면기간 중 환류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 미달 시 차액 추징

* 이전·입주한 지역에서 투자·R&D·고용·상생출연금에 사용한 금액

- ②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감면요건을 강화¹⁾ 하고 사후관리²⁾ 요건,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³⁾ 및 최저한세⁴⁾ 를 모든 특례에 확대 적용

1) 추계과세 시 해당 연도는 감면배제 등

2) 위장이전 및 고용 감소 시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3) 지역소재 사업용 자산 투자누계액의 7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4) 단, 현재와 같이 100% 감면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시 소득·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 업종·투자금액 요건 등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규정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1) 부동산세제 합리화

- ◇ 부동산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 보호
- ◇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개편은 단계적 시행으로 설계

① 비거주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

【 양도소득세 정상화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주택 외로 이원화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 변경

□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개정안)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소득법)

① 거주 지원을 위해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 1세대 1주택자: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 거주 연 8%(최대 80%)

-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보유 연 2%(최대 30%) → 거주 연 2%(최대 30%)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에는 장특공제 배제 중으로 거주공제도 배제

② 공제수준 합리화를 위해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28}20억원 → ^{’29이후}10억원)

③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

구 분	’27년(현행과 같음)	’28년	’29년~
1세대 1주택자	거주 연 4%, 보유 연 4% 【10년, 최대 80%】	거주 연 6%, 보유 연 2% 【10년, 최대 80%】	거주 연 8% 【10년, 최대 80%】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보유 연 2% 【15년, 최대 30%】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 【15년, 최대 15% ^{보유} 또는 30% ^{거주} 】	거주 연 2% 【15년, 최대 30%】
공제 한도	(한도 없음)	20억원	10억원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종부세법)

- (1세대 1주택자) 주택가액 ^{공시가격} 14억원(^{시가}약 20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 (그 외)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9억원(^{시가}약 13억원) 초과시 부과(현행 유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세법)

- (1세대 1주택자)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금액 12억원 → 14억원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금액 12억원 → 9억원
- (그 외) 기본공제금액: 4억원 + $(5\text{억원} \times \frac{\text{거주용 주택가액}}{\text{주택가액 합계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종부세법 · 종부령)

- 1세대 1주택자, 지방 1·2주택자 : 60% → ('27이후) 70%
- 3주택자 등* : 60% → ('27) 70% → ('28이후) 80%

*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는 제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세법)

-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 하고,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인상(1.0% → 1.3%)

과세표준	현 행		'27년		'28년~
	1·2주택	3주택 이상	1·2주택	3주택 이상	모든 주택
3억원 이하	0.5%		(좌 동)		(좌 동)
3~6억원	0.7%		(좌 동)		
6~12억원	1.0%		1.3%		
12~25억원	1.3%	2.0%	1.5%	2.0%	2.0%
25~50억원	1.5%	3.0%	2.0%	3.0%	3.0%
50~94억원	2.0%	4.0%	2.7%	4.0%	4.0%
94억원 초과	2.7%	5.0%	3.5%	5.0%	5.0%

※ 법인(1·2주택 / 3주택 이상) : [현 행] 2.7% / 5.0% 단일세율

[개정안] ('27) 3.5% / 5.0% 단일세율 ('28~) 5.0% 단일세율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보유·연령) 개편(종부세법)**

- ❶ 거주 지원을 위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보유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거주공제)로 전환*

* '27년은 현재 보유공제의 1/2과 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

- ❷ 세액공제 한도 신설('27800만원 → '28이후600만원)

구 분	현 행			'27년			'28년~		
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	60세~	20%	연령별 공제	60세~	(현행과 같음)	연령별 공제	60세~	(현행과 같음)
		65세~	30%		65세~			65세~	
		70세~	40%		70세~			70세~	
	보유공제	5년~	20%	보유/거주 공제 중 선택	5년~	10%/ 20%	거주공제	5년~	20%
		10년~	40%		10년~	20%/ 40%		10년~	40%
		15년~	50%		15년~	25%/ 50%		15년~	50%
	공제율 한도		80%	공제율 한도		80%	공제율 한도		80%
공제 한도	(한도 없음)			800만원			600만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 해당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직전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종부세 제한

-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 세부담 상한 인상(150%→200%)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종부세법)**

* 주택 처분·상속 등 시점까지 납부 유예(신청요건: ①1세대 1주택자, ②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③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④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❶ 납부유예 신청 요건 중 소득요건을 완화(1,000만원 상향)하고, 종부세 부담이 큰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은 소득요건 미적용

*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1주택자로서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

- ❷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 제공시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 및 다주택 매도 기회 부여 】

□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 상향 (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¹⁾을 처분하고, 비수도권 이주시 '27년 50%(5억원 한도), '28년 30%(3억원 한도) 양도세 감면²⁾

1)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주택

2) 양도일부터 5년내 수도권 이주시 또는 수도권 주택 취득시 감면세액 추정

□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조특법·소득령·종부령)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취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주택가액 확대 및 1주택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 및 주택 수 제외 등

	현 행	개 정 안
대상 지역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소재*의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전 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외 지역 신규 확대**
가액 기준 (공시가격)	인구감소지역: 9억원 (수도권 접경 4억원)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원	인구감소지역: 9억원 (수도권 접경 6억원) 인구감소관심지역: 6억원 신규 확대 지역**: 4억원

*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인구감소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포함

** 추가되는 구체적인 지역은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규정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소득법)

- 종부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7~'28년간** 한시 완화

* 2년 이상 보유 / ** '26년 중 중과를 적용받은 양도분도 포함

<중과세율>	현 행	'27년	'28년	'29년~
2주택자	+20%p	+5%p	+10%p	+20%p
3주택 이상자	+30%p	+10%p	+15%p	+30%p

【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소득령·종부령)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 단축(3년→2년)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취득

※ (양도) '26.8.4.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시행일('26.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 '26.8.4.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27.6.1.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종전규정 적용] '26.8.3.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조특법·소득령·법인령)

-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 ('26.10.1. 시행)

- '27년까지 양도시 중과배제·장특공제우대(50%) → '28년 1/2 중과*·장특공제우대 축소(30%) → 이후 양도세 중과·장특공제우대 배제

* (개인)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법인) 10% 추가과세

※ 임대 의무 중('27.1.1. 기준)인 경우 : (임대 의무 종료일~1년) 중과배제·장특공제우대(50%)
(1~2년) 1/2 중과·장특공제우대 축소(30%) (2년~) 중과·장특공제우대 배제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소득령)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기한 종료(~'26.12.31.) 및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내 양도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의 거주요건(2년) 면제

* 1주택자가 '21.12.20.~'26.12.31. 중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개시하고, 2년간 상생임대(임대료 5% 내 인상)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 최대 '29.12.31.까지 인정 (※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시 '27.12.31.까지)

☐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 과거 일정 시기에 취득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에 대해 기한 없이 적용되고 있는 양도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

* (예) '00~'01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100% 감면

** (수도권 아파트) 3년 내(~'29.12.31.) 양도 (그 외) 5년 내(~'31.12.31.) 양도

【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간주하는 사유(양도세·종부세) 】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소득법·종부세법)

*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의 공제율 계산에 적용 ('2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거주공제의 공제율 계산 및 기본공제 산정시 거주용 주택
해당 여부에 적용 ('27.1.1. 이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①, ②, ③, ④ 적용 / 종합부동산세: ①, ② 적용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시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최장 3년)

* 취학(고등학교·대학교), 직장변경·전근, 질병(1년 이상 치료·요양), 전학(학교폭력 피해),
해외체류(취학·직장변경·전근), 부모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

②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1/2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

③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부 특례주택*은 해당 특례주택 보유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지방저가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세컨드} 홈,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 기존 보유주택과 특례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에 한함

④ 등록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단,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연 2%, 최대 30%)

* 소득령 §167의3①(2) 중과 배제 임대주택

【 주택 공급 지원 】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조특법)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 10% 감면

- 공공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을 상향(10→15%) 및 적용기한 1년 연장(~'28.12.31.)

☐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조특법)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인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중

- 주택공급 촉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시 5년간 합산배제 대상에 별도합산 토지*를 추가하여 세부담 경감

* 건축물 부속토지 등 기업의 경제·생산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예: 상업용 건물 부수토지)

②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 1년 유예기간('27년) 부여 후 '28년 시행

☐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 배제(소득법)

-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위해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장특공제(최대 30%) 적용 배제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상향(소득법·법인법)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을 10%p 상향

* (소득세) 기본세율(6~45%) + 10%p → 20%p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10% → 20%

☐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종합합산 토지 최고세율 인상 (3% → 4%)

과세표준	현 행	개 정 안
15억원 이하	1%	(현행과 같음)
15~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	4%

2) 가업상속공제 개편

◇ ‘가업’ 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 신설

□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상증령)

- ‘가업(家業)’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 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로 규정
- * 단, 프랜차이즈, 부동산 관련 수입(예: 임대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 등은 제외

□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상증법·상증령)

- 공제 대상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727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를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요건 충족 간주

□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상증법·상증령)

- (심사위원회)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 [심사사항] ①‘가업’ 해당 여부, ②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
- (기간요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현행 10년)한 경우에 적용하고, 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현행 5년)
-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는 부족기간(30년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 연장
- (업종유지)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업종 변경 허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및 공제방식 조정(상증법·상증령)**

- **(토지공제)**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2~3배)* 및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1㎡당 1,000만원) 신설
 - * [현 행]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外) 7배
[개정안]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기타) 3배
 -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하되, 최대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상향
 - * [현 행] 10/20/30년 이상 각각 300/400/600억원
 - **(공제방식)**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
 - * [현 행] 주업종이 공제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비공제 업종인 경우에도 모든 사업용자산(법인의 경우 주식가액 × 자산중 모든 사업용자산의 비중) 공제 적용
- ※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개편과 유사하게 업종, 요건 등 개편
- * 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의 경영기간 요건은 20년 적용

□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 매수자에게 세제지원
 - **(매도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 요건: ❶(업종)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❷(규모)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❸(업력) 20년 이상 경영한 자, ❹(연령·지분)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 **(매수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한도: 연 5억원)
 - * 요건: 매도기업(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 또는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일 것
 - ** 사후관리: 승계받은 자산·지분 및 고용 유지, 사업 계속 등

3) 비과세·감면 정비

◇ 조세지출 제도를 획기적 정비(총 241건 중 115건 정비)

- (종료) 장기·관행적 제도 등 실효성 낮은 제도는 종료
- (재정전환) 재분배 효과,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전환
- (재설계)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춰 재설계
- (상시화)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상시지원

	종료	재정전환	재설계	상시화	계
정비건수	20	17	64	14	115

① 종 료 (총 20건)

□ 지원 목적 달성, 활용 저조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 종료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대당 70만원 한도) 적용기한 종료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임금삭감액의 10~15% 법인세 세액공제 및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50% 소득세 소득공제
- 근로소득 중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시 종료(~'28.12.31.)
 -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의 10~20%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농·수협 조합원 등의 용자서류 및 예·적금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건당 최대 7만원) 적용기한 종료
- 외국인 관광객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27.6.30.까지 운영 후 종료(현행 종료 기한: '28.12.31.)
 - *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 시 객실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② 재정전환 (총 17건)

☐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재정전환(소득법·조특법)

* (출산·입양) 출생한 자녀 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혼인)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 세액공제 (생애 1회)

-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를 위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정전환(조특법)

- 전기차·수소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재정지원으로 전환, 지원효율성 제고('27.1.1.~)

차 종	한 도	현 행		개 정 안		
		'26년	'27년	'27년	'28년	'29년
전기차		300만원	종 료	200만원	100만원	종 료
수소전기차		400만원	종 료	300만원	150만원	종 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재정전환 등(조특법)

* (기본공제율)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30%
 (추가공제율)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00만원

-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
-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대(총급여 요건 폐지)하고,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하향 조정

③ 재실제 (총 64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공제 적용**

* 취학,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허용

** '27년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29년까지 현행 규정 적용

☐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

-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시설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축소(1.3→1.2%)하여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기한 종료

* 공제율(%): (기본) 1.0 / (우대) [현행] 1.3 → [개정안] ('27~'29) 1.2

한도(만원): (기본) 500 / (우대) [현행] 1,000 → [개정안] ('27~) 500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조특법)

* 종합과세(6~45%) 대신 공제없이 19% 특례세율 선택 적용 가능

-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을 조정(19→21%)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 성과보상기금에 3년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 감면

-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중 중견기업 근로자 제외

☐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조특법)**

-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신성장원천·국가전략 세부 기술·시설별 적용기한**도 도입하여 주기적 재평가

* [현행] 적용기한 없음 → [개정안] '29.12.31. (국가전략기술과 동일)

** 선정연도에 따라 '27.12.31~'31.12.31.로 차등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감면을 정비(조특령)**

* 85㎡·6억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아파트 제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20~75% 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 대해 임대호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감면을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임대호수 구분없음)
	1호 임대	2호 이상 임대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	75%	50%	50%
그 외	30%	20%	20%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 기업규모/소재지/채용대상/연차에 따라 고용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중소) 400~2,000만원, (중견) 300~900만원, (대기업) 300~500만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육아 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 '27년 행복한일터 인증제(노동부)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 **창업중소기업 등의 용자 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조특법)**

- 금융기관의 창업 중소기업 용자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 축소(100→50%)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면제

1) 세제 합리화

□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상증령)

-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 충족시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주식 평가기간을 확장하여 주식 재평가·결정
- (적용요건) ① 또는 ②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 ①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
 - * 최근 13반기(6년 6개월) 중 누적 12반기(6년) ** 시가총액 / 회계상 순자산가치
 - ※ 금융위·거래소에서 추진중인 '저PBR 기업 공표제도' 기준 등 반영
 - ② (가) 행위요건 & (나) 주가 하락요건 모두 충족
 - (가) 최근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행위로서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존재
 - (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
 - * 현행 상장주식 평가금액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
 - **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1년·2년·3년간 종가 평균 각각 비교
- (위원회 심의) 평가심의위원회(국세청) 심의로 확정(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시 현행 평가방법 유지)
- (재평가 방법) 평가기간 확장(최소 30% 할증평가)
 - (요건 ① 해당시)
 - Max{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 (현행 평가방법) × 1.3}
 - *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1년·2년·3년·4년·5년·6년·6개월간 각각 종가의 평균
 - (요건 ② 해당시) Max{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 *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1년·2년·3년간 각각 종가의 평균

□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99% 이상인 금
- 한국은행이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서 매입한 금지금을 보관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법인법·령, 소득법·령, 상증법등)**

-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26.3월)을 반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의결권배당 등 권리 제한, 취득일 1년 내 소각 의무화, 처분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등

	현 행		개 정 안
법인 과세	처분시 양도차익 과세 (자산거래)		과세대상 제외 (자본거래)
주주 과세	소각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소각시 의제배당 과세* (자본거래)	⇒ 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 (자본거래)
	처분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양도차익 과세 (자산거래)	

* 거래소에서 자사주 취득시 양도차익 과세

-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과정에서 자기주식으로 전환·소각시 과세이연 허용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 종료(주세법)**

-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20%) 적용기한 종료(~26.12.31.)

□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국조법)**

* 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해외자회사

** CFC 과세제도: 소득유보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CFC의 세 부담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유보소득에 대해 주주(내국법인 등)에 배당 과세

- 특정외국법인 세 부담률 기준을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과 동일하게 15%*로 조정

* [현행] CFC 세 부담률 기준 : 17.5%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25%) × 70%)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법인령)**

*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특정국가내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시, 그 미달세액을 특정국가에서 우선 추가 과세

- 해외진출기업의 세 부담 합리화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적격 소재국추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 포상금 제도 개편(국기법·령, 관세법·령)

- 탈세·재산은닉 등에 대한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 상향

* [현행] (국세) 탈세제보 포상금 40억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30억원, 그 외 20억원
(관세) 탈세제보 포상금 1.5억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10억원, 그 외 1.5억원

[현 행]		[개 정 안]	
추징세액	지급률	추징세액	지급률
5천만원(관세2천만원) ~ 5억원	20%	3천만원(관세1천만원) ~ 5억원	30%
5억원 ~ 20억원	15%	5억원 ~ 20억원	20%
20억원 ~ 30억원	10%	20억원 ~	10%
30억원 ~	5%	<삭 제>	

☐ 해외신탁 관리 강화(국기법·령, 국조법, 관세법·령)

- ①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

* 포상금 지급기준: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2억원) 15%, (2억원 초과) 10%

- ② 해외신탁 신고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한내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 인상(1억원→10억원)

*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부과

☐ 압류해제 요건* 강화(국징법)

* 압류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 보다 적을 경우 등

- 공매로 국세에 배부될 금액이 없더라도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압류 지속

* 채권 설정 시기·목적,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해 국세채납정리위원회가 판단

☐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관세법·령)

-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관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구 분	내 용
확인 대상	직전연도 수입액 3천만달러 미만인 자 중 신청자(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외)
확인 내용	매 과세연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세액 적정성
제출 기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시 특례	수입물품 검사 비율 인하 등

3) 납세편의 제고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법인령, 소득령)

- 물가상승 등 거래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적격증빙 없는 기업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 건당 기준금액: (경조금) 20만원 → 30만원 이하, (그 외) 3만원 → 5만원 이하

☐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납부해야할 세액의 20% 부과
(무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내 신고시 : 50%, 1~3개월 내 : 30%, 3~6개월 내 : 20%

-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상향(50% → 75%)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고지일})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해야할 세액 × 지연일수 × 0.022% 부과
(과세전적부심 결정지연시) 처리기한(30일 이내) 경과분 가산세에 한하여 50% 감면 적용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을 상향(50% → 75%)

☐ **동산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합리화(부가령)**

- 신탁재산은 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대상 재산이 다수인 동산(예: 금지금)은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

☐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국징법·령)**

* 의무 불이행 등 사유로 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일정기간 유치하는 제도

-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유도 위해 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 감치 신청* 제외

* ①3회 이상 체납, ②체납 1년 경과, ③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 감치 신청

☐ **외국법인과 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부가령)**

- 외국법인과 용역거래시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리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면 공급받는 자가 납부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부가법·부가령·부가칙)**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납세자 착오 방지

* '작성 연월일'은 공급시기를 기재하는 란이나, '실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혼동·착오기재하여 납세자 불이익 발생 우려

V.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34,430억원

- (증가요인) 종합부동산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
- (감소요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R&D·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등

< 연도별 세수효과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합 계	34,430	7,812	18,893	4,882	642	2,201
소 득 세	△5,579	△11,343	3,130	177	213	2,244
법 인 세	△1,636	△20	△1,583	△44	55	△44
부 가 가 치 세	6,007	4,328	1,540	111	28	
종합부동산세	21,815	8,227	10,966	2,622		
기 타	13,823	6,620	4,840	2,016	346	1

2. 세부담 귀착

개인		법인		기 타 ²⁾	합 계
서민·중산층 ¹⁾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12,258	1,226	△791	△578	46,831	34,430

1)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자 (총급여 8,900만원 이하인 자)

2) 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공익법인 및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조세지출→재정전환 항목(+1.1조원)도 기타로 분류)

VI. 추진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1개

☐ 내국세(10개)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 관세(1개)

- 관세법

2 추진일정

☐ 8월 3일(월)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8월 4일(화) ~ 8월 20일(목) : 입법예고(16일간)

* 관세법: 8월 4일(화) ~ 8월 11일(화) (7일간)

☐ 8월 27일(목) : 차관회의

☐ 9월 1일(화) : 국무회의

☐ 9월 3일(목)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참 고

'26년 조세지출 정비 결과

◇ 전체 241개 조세지출 항목 전수검토 결과 종료 20개, 재정전환 17개, 재설계 64개, 상시화 14개 등 총 115개 항목 정비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료 (20)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세제지원 목적 달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과세특례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합병 법인세 과세특례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실효성 저조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경감	
	주한미군 등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면제	유사·중복 지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활용 저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 변제 과세특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기회발전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소액담배, 특수제조용 담배 부가가치세 면제	
	기부장려금	
재정전환 (17)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세액공제)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혼인세액공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중교통분)	유사 재정사업 통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감차보상분)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재 설계 (6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방주도 성장 지원 및 지방이전 특구입주 실효성 제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시 과세특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서민·청년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근로장려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과세특례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산업 경쟁력 강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합리화 및 과세형평 제고
	통합고용세액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재 설계 (64)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합리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지원 필요성 감소 등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농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전자고지분)	
	군인 등에게 판매 물품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용자서류 인지세 면제	
상 시 화 (14)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지속지원 필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BTO방식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연장 (28)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필요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주 등의 자산양도 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 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주 등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 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과세특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부동산 양도차익 특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금융시장 효율화,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면세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